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확인사항 ※

□ 공고문 반드시 확인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모두 제출
* 상황에 따라 서류 미(오)제출 시 보완요청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소상공인24(www.sbiz24.kr)**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 대표자 본인신청이 원칙, 제3자(공급업체) 부당 가입(대리신청) 등 적발 시 참여배제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품목

- 모든 지원항목은 소공인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합성에 부합해야 함
- 안전환경조성 항목은 반드시 **작업장 안전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중대재해 항목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必 제출)** 5인 이상 확인가능 해야 함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지원품목 예시**
① 청소기 - 부적합(작업환경의 안전성 개선효과 불인정)
② (이동식)에어컨 - 부적합(에너지효율의 연계 및 효과성 불인정)
③ 공구함 - 부적합(안전도, 안전대,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50만원 미만 지원)
* 지원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장비의 경우, 유선문의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 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50개사	7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43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에너지효율개선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19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소 계			970개사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6.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사업단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단계	신청절차
사업 조회	①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신청 버튼 클릭
신청 준비	③ 정보수집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④ 마이데이터동의	○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⑤ 자가진단	○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 제출서류 모두 첨부 (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입력시점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조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제출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은 자

제출서류		발급처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4개 서류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②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반드시 둘 다 제출 ③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반드시 둘 다 제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 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input type="checkbox"/>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서류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2) 소상공인확인서 미발급 자

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4개 서류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②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반드시 둘 다 제출 ③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반드시 둘 다 제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 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input type="checkbox"/>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②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반드시 둘 다 제출	
	③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반드시 둘 다 제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input type="checkbox"/> 아래 4개 서류 중 택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②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가점서류	<input type="checkbox"/>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 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 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 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립 지원 효과성
*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산업안전 서면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본 심사 (70점)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품목 심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탄소중립 서면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본 심사 (70점)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20
	·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품목 심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백년소공인, 일회용품대체품 제조소공인	5
------------	--	---

* 2020년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조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2)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풍수해보험 가입자(1)	○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3	안전사고 유경험 업체(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4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	○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 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6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2)	○ 환경부에서 배포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7	백년소공인(3)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24.6.13.)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6. 추진절차(안)



7. 접수·문의처

구분	담당자	문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표준협회(안전),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에너지)	☎ 02-6240-4862,4861(안전) 02-2135-8089(에너지)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24 시스템오류문의	☎ 1644-5302

8.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소공인은 서면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붙임 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붙임 2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 종로구 종로1·2·3·4·5·6가동, 창신제1·2동, 승인제1·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 광진구 증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경기도	○ 군포시 군포1동
15	○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16	○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17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19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품 제조업)
20	○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	○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2	○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4	○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26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8	인천광역시		○ 동구 송현동, 송림동
29		○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30	강원도	○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1		○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2		○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3		○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	대전광역시	○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충청남도	○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37		○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38		○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9	전라북도	○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0		○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41		○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2	광주광역시	○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		○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4	대구광역시	○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5		○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6		○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7	경상북도	○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8	부산광역시	○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9		○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50	경상남도	○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1		○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 3 |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제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건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건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 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폐기완료확약서	○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 ※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